MS Your Valuation Partner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평 가 의 뢰 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정 춘 호
건 명	이 승 광 소유물건
문 서 번 호	2026타경145
감정평가서번호	미래새한 2606-51-05009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Mirae & Saehan Appraisal Co.,LTD
TEL : (061)332-7475 FAX : (061)332-1482

(선박)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 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 규 진 (인)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대표자 양 용 하 (인)

감정평가액 **일억칠천팔십일만오천원정 (₩170,815,000.-)**

의 뢰 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정 춘 호	**감정평가 목적**	경매
채 무 자	-	**제 출 처**	경매2계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이 승 광 (2026타경145)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 조사기간 / 작성일**	2026-06-17 / 2026-06-17 / 2026-06-22

감정평가 내용	공부(의뢰) 종류	공부(의뢰) 면적(㎡) 또는 수량	사정 종류	사정 면적(㎡) 또는 수량	감정평가액 단가	감정평가액 금액
	선박	1척	선박	1척	-	95,815,000
	(제시외 어업허가권)	1식	(제시외 어업허가권)	1식	-	75,0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170,815,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 합니다.

심 사 자
감정평가사 (인)

선박 감정평가 명세표

선박명칭	광민호	선박번호	0303004-6469105	선적항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구분	적재용량 및 수량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단가	금액	
선체	7.93 G/T	5,000,000	39,650,000	25,000,000x0.200(6/20),관찰감가
기관	700 HP	63,000	44,100,000	180,000x0.355(11/20),관찰감가
보조기관	112 HP	35,000	3,920,000	100,000x0.355(11/20),관찰감가
의장품	11 점		8,145,000	'선박의장품 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합계			₩95,815,000.-	잔가율 (선체:10%, 기관:10%)

선박의 내용

선체

종류	용도	등급	선질	선형	총톤수 (G/T)	순톤수 (N/T)	적화톤수 (DWT)	주요치수 (M)	
동력선	어선 (연안자망어업)	-	FRP	-	7.93	-	-	길이	13.55
								너비	3.93
								깊이	0.91

선창	객실	승무원실	조선지	조선소	건조연월일	진수연월일	비고
-	-	-	전라남도 목포시	일우조선소	-	2003-02-27	-

기관

종류	실마력	공칭마력	형식	기통수 (CYL)	회전수 (rpm)	기통경	행정 (m/m)	제작소	제조일자 및 번호
DIESEL ENGINE	514kW (700HP)	-	-	6	2,200	-	-	YANMAR	2016-09-23 3648(KST)

속력 (Knots)	추진기의 종류 및 수량	보조기계 및 기관의 종류와 수량	비고
-	나선일체식추진기 1기	'선박의장품 감정평가 명세표'참조	-

선박의장품 감정평가 명세표

기호	명 칭 (종 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제 작 자 제작번호 제작(취득)일자 수입 신고 일자	수 량	감 정 평 가 액		비 고
				단 가	금 액	
1	조타기 Hyd' Type	신동	1식	-	-	선체 포함평가
2	V-Pass Model: GMT-EYENAVT	(주)GMT 미상	1식	-	696,000	관찰감가 1,500,000 x 0.464(10/15)
3	AIS Model: HIS-770B	해양오릭스 미상	1식	-	409,000	관찰감가 1,200,000 x 0.341(8/15)
4	VHF 무전기 Model: STR-6000B	삼영 미상	1식	-	341,000	관찰감가 1,000,000 x 0.341(8/15)
5	SSB Model: HR-2710B	해성 미상	1식	-	173,000	관찰감가 1,100,000 x 0.158(3/15)
6	GPS 플로터 Model: AQUA	해양 2011.05	1식	-	363,000	관찰감가 2,300,000 x 0.158(3/15)
7	RADAR Model: RA771UA	ANRITSU 1995.08	1식	-	711,000	관찰감가 4,500,000 x 0.158(3/15)
8	어군탐지기 HE-775-Di-Bo	HONDEX 미상	1식	-	2,227,000	관찰감가 4,800,000 x 0.464(10/15)
9	사이드로라 Roll x 1ea	국산 미상	1식	-	-	선체 포함평가
10	양망기 Hyd' Type	국산 미상	1식	-	3,225,000	관찰감가 15,000,000 x 0.215(5/15)

선박의장품 감정평가 명세표

기호	명 칭 (종 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제 작 자 제작번호 제작(취득)일자 수입 신고 일자	수 량	감 정 평 가 액		비 고
				단 가	금 액	
11	Anchor, 각종 Pump, 배관, 전기장치 등 기타부대설비일체	국산	1식	-	-	선체 포함평가
	합 계				**₩8,145,000.-**	
	이	하	여	백		

어업허가권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번호	어업권의 표시	어장의 면적 (㎡)		감정평가액		비고
		공부	사정	단가	금액	
ㄱ	제시외 어업허가권 - 허가일시: 2023년 12월 28일 - 허가번호: 진도군 연안자망어업 제2024-00061호 - 어업의 종류: 연안자망어업 - 조업구역: 전라남도 연안 일원 - 어업의 시기: 01-01~12-31 - 포획물.채취물의 종류: 서대류,부세,전어, 수꽃게,암꽃게 - 허가기간: 2024년01월01일부터 2028년12월31일까지	1식	1식	-	75,000,000	
	합 계				**₩75,000,000.-**	
	이	하	여	백		

선박 감정평가 요항표

1. 선체의현황	2. 기관의 현황	3. 의장품의현황
4. 운항사항	5. 실사장소	6. 기타 참고사항

1. 선체의현황	본 선박은 2003년 02월 전라남도 소재 "일우조선소"에서 진수된 7.93톤급 어선(FRP)으로서, 선체의 제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임.
2. 기관의 현황	주기관은 YANMAR에서 제작된 디젤기관 514kW(700HP) 1기, 보조기관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된 디젤기관 112HP 1기로서, 관리상태 및 제현상은 보통시됨.
3. 의장품의현황	본 선박에 거치된 의장품은 본선 운항 등에 필요한 조타설비, 항해장비 등으로서, 제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임.
4. 운항사항	본 선은 어업(연안자망어업)을 목적으로 운항중임.
5. 실사장소	본 선박은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소재 "목포남항"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며, 동장소에서 실사하였음.
6. 기타 참고사항	선박검사유효기간 : 어선검사증서상 2023년 03월 07일부터 2028년 03월 06일까지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대상물건은 연안자망 어업을 위해 2003년 02월 27일에 진수된 어선(광민호, 총톤수: 7.93G/T)으로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의뢰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선박)의 개요

구분			내 역
선박명칭			광민호
선박번호			0303004-6469105
선박종류(용도)			어선(연안자망어업)
선적항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조선지			전라남도 목포시 경동1가
조선소			일우조선소
진수일자			2003-02-27
건조일자			-
<선체>	총 톤수		7.93
	주요치수 (M)	길이	13.55
		너비	3.93
		깊이	0.91
<기관>	기관의 종류		디젤기관
	실마력/회전수		514kw(700HP) / 2,200rpm
	제작소		YANMAR
	제조일자		2016-09-2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기준가치

가. 개 요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즉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경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4.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없 음.

5.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6년 06월 17일을 기준시점으로 정함.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물건은 2026년 06월 17일자 실지조사를 통해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II 감정평가의 관련 규정 및 적용방법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에 의거하여 평가함.

2. 감정평가 관련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 · 기관 · 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실무기준 630.3.3 [선박의 감정평가방법]

①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선체 · 기관 · 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선체는 총 톤수, 기관은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선박의 감가수정은 선체 · 기관 · 의장별로 정률법을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정도 · 관리상태 · 수리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가수정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별표10]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선박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실무기준 630.1.3 [기계기구류의 감정평가방법]

① 기계기구를 감정평가 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물건과 현상·성능 등이 비슷한 동종물건의 적절한 거래사례를 통해 시중시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외국으로부터의 도입기계기구류를 포함한다)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 [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 할 때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 해야 한다.

3.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가. 대상물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대상물건은 선박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동종 유사 선박의 선체 신조가격, 기관 및 의장품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및 현상 등을 참작한 선체, 기관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하되, 유사 선박의 거래사례 포착의 어려움 및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과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算定)한 시산가액(試算價額)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나. 원가법(주된 방법)

"원가법"은 기준시점에서 선체 · 기관 · 의장품별로 재조달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감가수정(減價修正)하여 대상물건인 선박이 갖는 현재의 가격, 즉 원가를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은 상각자산(선박, 건물, 기계기구류, 구축물 등)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선박감정평가에 가장 적합한 방법임.

다.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 선박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선박의 매매사례 또는 방매사례와 비교하여 기준시점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을 가하여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선박에서의 물적 유사성과 동일성이란 선종, 톤수, 선형, 속력 기타 기기의 유사성, 동일성을 말하고, 시간적 유사성은 사례의 발생일과 대상물건 선박의 기준시점 사이가 가까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함.
최근 시장 경기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선박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시간적 유사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선박은 본질적으로 각각의 성능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동일 선박에 있어서도 실제 매매가격은 선령, 유지 및 관리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 예가 적지 않고, 대상 선박과 비교 할 사례 선박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선령, 선종, 주기마력과 속력, DWT 및 G/T, 선형, 선박 의장품과 현황, 선급, 기준시점과 시차, 성능, 건조 조선소 등이 대상 선박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나 거래가격 추이 및 객관적인 실거래가격 수준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라.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收益還元法)"은 대상물건을 운용함으로서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서, 선박의 순수익은 운항항로와 해상물동량의 변동, 시황의 변동, 국제 경기에 따라 극히 민감하므로 안정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적절한 환원이율의 채택이 곤란하므로 대상물건의 평가방법적용에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가. 본 선박은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소재 목포남항 인근 해상에 소재하며, 동 장소에서 실사하였음.

나. 선체의 규격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어선원부, 선적증서, 검사증서 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불법 톤수 변경 및 개조여부 등은 경매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다. 본 선박에 설치된 보조기관, 의장품의 목록은 별도로 제시되지 아니하여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품목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평가하였으며 일부는 선체 및 기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체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권 및 정상작동 여부 등 제반사항 재확인 하시기 바람.

라. 본건 제시외 어업허가권은 수산업법 제44조에 의거 선박과 일체로 거래되며 어선 소유권 이전시 어업허가의 지위도 승계되는 바, 경매 평가 관행에 의거 제시외 어업허가권을 일반적인 거래시세, 평가사례, 호가수준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으니 제시외 어업허가권 승계여부 및 조건 등에 관하여 경매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II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적용 감정평가 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동종 유사 선박의 선체 신조가격, 기관 및 의장품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및 현상 등을 참작한 선체, 기관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하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선박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음.

적 산 가 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

2.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가. 재조달원가(신조단가) 산정

[출처: 감정평가 실무기준]

630.1.3.1.1 국산기계기구류의 재조달원가

국산기계기구류의 재조달원가는 기준시점 당시 같거나 비슷한 물건을 재취득하는 데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명칭 및 규격이 같은 물건인 경우에도 제조기술, 제작자, 성능, 부대시설의 유무 등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

630.1.3.1.2 도입기계기구류의 재조달원가

① 도입기계기구류의 재조달원가는 수입가격에 적정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입시차가 상당하여 이 방법에 따라 산정된 재조달원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상물건과 제작자·형식·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최근 수입가격에 적정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제작국의 동종기계기구류로서 가치형성요인이 비슷한 물건의 최근 수입가격 또는 해당 기계기구류의 도입 당시 수입가격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입가격에 적정한 부대비용을 더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선체> 신조가격 수준

■ 자료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간 선박감정평가(2023-01-01기준)

선 종		규모 (CBM/TEU/DWT)	신조단가 (CBM/TEU/DWT, 단위: $)
상선	LPG Carrier	22,000~23,000CBM	2,080~2,375
		38,000~40,000CBM	1,080~1,590
		45,000CBM	1,540~1,625
		82,000~91,000CBM	875~1,250
	LNG Carrier	18,000CBM	3,040~3,460
		88,000CBM	1,080
		170,000~180,000CBM	1,040~1,550
		200,000CBM	1,650~1,450
	VLGC	84,000~91,000CBM	800~1,000
	VLEC	98,000~99,000CBM	1,200~1,550
	Liquefied GAS Carrier	18,000~31,000CBM	1,700~2,600
		40,000CBM	1,080~1,350
		86,000~98,000CBM	750~1,150
		174,000~180,000	1,000~1,200
	Container Carrier	1,000 ~ 2,800TEU	13,290~44,050
		55,000 ~ 9,000TEU	14,100~28,400
		11,400 ~ 28,000TEU	6,800~13,210
		77,000TEU	1,580
		13,000 ~ 150,000TEU	730~920
	Tanker	3,500 ~ 6,500DWT	2,700 ~ 4,000
		10,000 ~ 33,000DWT	1,250 ~ 1,420
		50,000 ~ 51,000DWT	670 ~ 1,170
		114,000 ~159,000DWT	300 ~ 590
		300,000 ~ 320,000DWT	290 ~ 380
	Bulker	62,000 ~ 63,000DWT	500~590
		180,000DWT	280 ~ 350
	ROPAX	53,000DWT	3,500
	CON-RO	45,700 ~ 53,000DWT	1,87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선 종		톤	선질	건조원가 (단위: 천원)
어선	외끌이 기선 저인망	70톤급	강	1,375,000
	쌍끌이 기선 저인망	120톤급	강	2,767,525
	동해구 기저(트롤)	50톤급	강	993,397
	대형트롤	130톤급	강	2,774,992
	대형선망(본선)	129톤급	강	18,828,450
	근해채낚기	70톤급	강	1,582,537
		50톤급	FRP	1,050,000
		24톤급	FRP	750,000
	근해자망	50톤급	강	905,107
		50톤급	FRP	750,000
	근해안강망	70톤급	강	1,528,267
		24톤급	FRP	750,000
	근해통발	50톤급	강	1,174,027
		50톤급	FRP	850,000

■ 상기 선가는 조선소에 따라 품질이 상이하므로 조선지에 따라 선가도 차이가 클 수 있으며, 신조단가는 2022년 1월~2023년 3월 수주된 선박의 데이터임.

■ 단가는 단위규모당 가격으로, 선가(척당가격)/규모(CBM, TEU, DWT)로 계산되었음.

- CBM(Cubic meter, ㎥):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 부피
- TEU(Twenty foot Equivalent Units):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단위 용적
- DWT(Dead Weight Tonnage): 재화중량톤수로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최대무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자료출처: (구)한국감정원 발간 선박감정평가(2010-12)

선 종		구 분	신조단가(GT) 신톤수 기준(단위: 천원)
원양어선	참치연승어선	200~400G/T	5,900 ~ 7,300
	오징어채낚기선	200~500GT	5,900 ~ 7,300
	참치선망어선	1,000GT	12,000 ~ 14,000
	스탄트롤선	공모선	-
연근해어선	선망본선	130G/T	5,100 ~ 6,200
	선망등선	80G/T	13,000 ~ 16,500
	안강망어선	-	13,500 ~ 17,000
	근해채낚기,유자망,선어운반선,권현망 등	강선	6,200 ~ 7,300
		F.R.P(29G/T)	10,000 ~ 12,000
	기선저인망어선 근해트롤선	-	8,500 ~ 10,500
유조선 및 화물선		500G/T미만	3,500 ~ 5,000
		500~1,000GT	2,800 ~ 4,000
		1,000~3,000GT	2,700 ~ 3,800
		3,000~10,000G/T	1,500 ~ 3,200
		10,000~20,000G/T	1,200 ~ 1,900
		20,000~60,000G/T	700 ~ 1,500
		60,000G/T이상	500 ~ 900
일반여객선		일반여객선(1)	5,000 ~ 6,500
		일반여객선(2)	7,000 ~ 8,500
특수여객선		공기부양선(40~110G/T)	19,000 ~ 23,000
예인선		일반예인선	6,500 ~ 8,500
		특수예인선	9,000 ~ 11,000
부선 (Flat, Hold & Oil Barge)		중량물부선	1,500 ~ 1,800
		일반부선	1,400 ~ 1,700

2) <기관> 신조가격 수준

■ 자료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간 선박감정평가(2023-01-01기준)

구 분		신조단가 (PS 기준, 단위: 천원)	
주기관	Marin Diesel Engine	고 속	147,000 ~ 275,000
		중 · 저속	367,750 이하
보조기관	Marin Diesel Engine	국산 고속	88,000 ~ 184,000
		외산 중 · 고속	169,000 ~ 250,000

■ 축계, 감속계, Generator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기관의 가격임.

■ 자료출처: (구)한국감정원 발간 선박감정평가(2010-12)

구 분		신조단가 (KW 기준, 단위: 천원)	
주기관	Marin Diesel Engine	고 속	170,000 ~ 370,000
		중 · 저속	300,000 ~ 530,000
보조기관	Marin Diesel Engine	국산 고속	120,000 ~ 200,000
		외산 중 · 고속	200,000 ~ 330,000

3) 유사 선박의 감정평가사례

기호	선박종류 (용도)	총톤수 (G/T)	진수일	평가목적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G/T)	감정평가액 (원)
①	동력선 (어선)	9.77	2019-10	경매	2026-06-15	25,000,000	138,730,000
②	동력선 (어선)	7.93	2008-04	경매	2026-05-01	25,000,000	44,408,000

4) 재조달원가(신조단가) 결정

재조달원가는 대상 선박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것을 상정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이나, 선박은 선형과 규모, 구조 및 성능 등이 각기 상이하여 정확한 신조가액을 파악하기는 곤란한 바 대상 선박은 상기 제시된 선종별 선체 및 기관의 신조가격 참고자료 및 유사 선박의 신조가격 수준과 감정평가사례 등을 참고하고 선체, 기관, 의장품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등에 따른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달원가(신조단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일련번호	선명	구분	재조달원가(원)	적용단위
1	광민호	선체	25,000,000	G/T
		기관	180,000	HP
		보조기관	100,000	HP
		의장품	'선박의장품 감정평가 명세표'참조	

나. 감가수정

■ 개 요

"감가수정(減價修正)"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함.

■ 감가수정 방법 및 결정

기계기구 및 전기설비 등 경제적 효용이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발휘되는 자산의 가치는 설치 및 가동초기에 기계적인 마모가 크게 일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급속히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바 통상적으로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함이 일반적임.

대상 선박의 감가수정은 구조, 규격, 형식, 용량, 작업능력,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매년 체감하는 대상물건의 잔존가치에 일정한 감가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인 "정률법"을 적용함.

[출처: 감정평가 실무기준]

620-1.3.3.3 감가수정

① 기계기구류는 정률법으로 감가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②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로 한다.

③ 장래보존연수는 대상물건의 내용연수 범위에서 사용·수리의 정도, 관리상태 등을 고려한 장래 사용가능한 기간으로 한다.

다. 경제적 내용연수 및 경과년수의 결정

"경제적 내용연수"란 물리적 내구연한의 범위 내에서 물건의 유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용가능기간으로서, 대상물건의 내용연수 조정은 수산업법 시행령,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발간한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 자료집"의 동종 또는 유사물건의 내용연수 등을 참고하고 대상 선박의 유지, 관리상태 및 자본적 지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수산업법 상 선체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율

[출처: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0]

선질별	내용연수	잔존가치율
강선	25년	20%
강화플라스틱(F.R.P)선	20년	10%
목선	15년	1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선체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율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간 선박감정평가(2023-01-01기준)]

용도	선종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감가율	잔존가치율
여객선	강선		20년	정률법	0.109	10%
	경금속선		20년	정률법	0.109	10%
	합성수지선(F.R.P)		20년	정률법	0.109	10%
	목선		12년	정액법	0.075	10%
화물선	강선	일반화물선	20년	정률법	0.1045	11%
		유조선	20년	정률법	0.109	10%
		특수화물선	14년	정률법	0.152	10%
		LNG운반선	20년	정률법	0.109	10%
	합성수지선(F.R.P)		20년	정률법	0.109	10%
	목선		14년	정액법	0.0643	10%
어선	강선		25년	정률법	0.0879	10%
	경금속선		16년	정률법	0.134	10%
	합성수지선(F.R.P)		15년	정률법	0.152	10%
	목선		12년	정액법	0.075	10%
예인선	강선		16년	정률법	0.134	10%
	목선		12년	정액법	0.075	10%
부선	강선		16년	정률법	0.134	10%
	시멘트선		10년	정액법	0.090	10%
기타선	강선		20년	정률법	0.134	10%
	경금속선		12년	정률법	0.175	10%
	합성수지선(F.R.P)		12년	정률법	0.175	10%
	목선		10년	정액법	0.090	1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기관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율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간 선박감정평가(2023-01-01기준)]

경과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잔가율	0.858	0.736	0.631	0.541	0.464	0.398	0.341	0.293
경과연수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년 초과
잔가율	0.251	0.215	0.184	0.158	0.136	0.117	0.100	0.100

■ 의장품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율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간 선박감정평가(2023-01-01기준)]

시설품명	내용연수	잔존가치율
의장품	15	10

■ 선체 및 기관의 내용연수

[출처: (구)한국감정원 발간 선박감정평가(2010-12)]

설비의 종류	영명	구 분	내용년수
화물선, 유조선	강조, 일반화물선, 전용화물선, 냉동화물선 화학제품 운반선	선체	20 ~ 25
		기관	20
여객선, 어선, 준설선, 구조선	강조	선체	20
		기관	20
원양어선	참치연승어선, 오징어채낚기선, 참치선망어선, 스탄트롤선	선체	20
연근해어선	선망본선, 등선, 선어운반선, 기선저인망어선, 근해트롤선	기관	20
여객선, 어선, 화물선	목조	선체	15 ~ 20
		기관	15 ~ 20
여객선, 어선	F.R.P	선체	15 ~ 20
		기관	15 ~ 20
토운선, 부선	강조	선체	20
모터 탑재 언선	-	-	6
의장품	-	-	15 ~ 2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경제적 내용연수 및 경과년수의 결정

선명	기준시점	진수일	구분	경제적 내용연수	경과년수		적용 잔존연수	비 고
					실제	유효		
광민호	2026-06-19	2003-02-27	선체	20	23	-	6	관찰감가
			기관	20	9	-	11	관찰감가
			보조기관	20	-	-	11	관찰감가
			의장품	'선박의장품 감정평가 명세표'참조				

라. 최종 잔가율 결정

"잔가율"이란 유형고정자산의 운용에 따른 경제적 효용을 다한 후에도 해당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가치의 비율로서, 대상 선박은 경제적 내용연수 만료 시 경제적 가치, 시장가격 및 대체제의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최종 잔가율 (%)	선체	기관	의장품
	10	10	10

3. 감정평가액 산출

일련 번호	구분	재조달원가 (원)	경제적 내용연수	경과년수		적용 잔존연수	잔존 가치율	적재용량 및 수량	단 가 (원)	감정평가액 (원)
				실제	유효					
1	선체	25,000,000	20	23	-	6	0.200	7.93GT	5,000,000	39,650,000
	기관	180,000	20	9	-	11	0.355	700HP	63,000	44,100,000
	보조기관	100,000	20	-	-	11	0.355	112HP	35,000	3,920,000
	의장품	'선박의장품 감정평가 명세표'참조								8,145,000
합 계								-	-	**95,815,000**

■ 잔존가치율: 최종잔가율^{n} (n = 유효경과년수 ÷ 경제적 내용년수)
■ 단 가: 재조달원가 × 잔존가치율
■ 감정평가액: 단가 × 적재용량 및 수량

Ⅳ 감정평가액 결정 및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일련번호	선 명	선박종류 (타입)	총톤수 (G/T)	감정평가액 (원)	비 고
1	광민호	어선 (연안자망어업)	7.93	95,815,000	-
합 계				95,815,000	

2. 결정 의견

대상 선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감정평가관련 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따라 선종별 선체 및 기관의 신조가격 참고자료 및 유사 선박의 신조가격 수준과 감정평가사례 등을 종합참작하여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833 인근해상 (보관장소)



사 진 용 지



본건 선박전경



본건 선박전경



조타실내부



선체 내부

사 진 용 지



주기관



보조기관



의장품1



의장품2

사 진 용 지



의장품3



의장품4



의장품5



의장품6

사 진 용 지



의장품7



의장품8



의장품9



의장품10

사 진 용 지



의장품11



의장품11



기타사진